「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(수시-4차)
(구미 확장단지 주차장 부지 기부채납)」

심 사 보 고 서

Ⅰ. 심사경과

1. **제출일자**: 2026년 10월 6일
2. **제 출 자**: 구미시장
3. **회부일자**: 2026년 10월 7일
4. **상정일자**: 2026년 10월 15일
 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Ⅱ. 제안 설명의 요지

1. 제안 설명자: 환경교통국장 박 영 일

2. 제안이유

○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40조제7항에 따른 구미 확장단지 조성사업의 매각수익 재투자 조항에 의거 기반시설 재투자에 해당하는 주차장 부지를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기부채납 받고자 함

3. 주요내용

【취득재산】

○ 위　　치 : 구미시 산동읍 신당리 1466번지, 1869번지

○ 대　　상 : 주차장 부지 2필지[5,000.0㎡(대), 598.5㎡(주차장)]

※ 신당리 1466번지 전체 13,359㎡ 중 5,000.0㎡ 취득

○ 기준가격 : 10,479백만원　　※ 2026년 개별공시지가 기준

- 신당리 1466번지 : 2,053,000원/㎡ × 5,000.0㎡ = 10,265백만원
- 신당리 1869번지 : 357,200원/㎡ × 598.5㎡ = 214백만원

○ 구미 확장단지 조성사업 현황

- 위　　치 : 옥계동 및 산동읍 일원
- 조성면적 : 2.476㎢(75만평)
- 사업기간 : 2008. ~ 2026.
- 사 업 비 : 8,207억원
- 시 행 자 : 한국수자원공사

○ 추진현황

- 구미 확장단지 1~3단계 준공　　: '24. 까지
- 공영주차장 조성 및 개방(신당리 1466, 170면) : '24. 4.

※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무상임차

- 매각수익 재투자 협의　　: '25. 1. ~ '26. 4.
- 구미 확장단지 4단계 준공　　: '26. 1.
- 매각수익 재투자 협약서 체결　　: '26. 4.
- 공유재산심의회 이행　　: '26. 9.
-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제출　　: '26. 9.

○ 향후추진계획

- 소유권 이전　　: '26. 10.
- 공영주차장 조성 및 개방(신당리 1869)　　: '27. 상반기

○ 근거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
- 「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 제12조
-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0조

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(수시-4차)

회계명 : 일반회계 (단위 : ㎡, 백만원)

구 분			건수	수량	금액
취득	계		2건	5598.5	10,479
	3.기타 취득	토지 건물 기타	2건	5598.5	10,479

취득 및 처분 재산목록

회계명 : 일반회계 (단위 : ㎡, 백만원)

구분	재 산 의 표 시			추정가액	취득 매각 시기	사 유	재산 소유자	비고
	재산 구분	소 재 지	수 량(㎡)					
계			5,598.5	10,479				
취득	토지	산동읍 신당리 1466	5,000	10,265	2026년	매각수익 재투자 기부채납	한국 수자원 공사	기부 채납
		산동읍 신당리 1869	598.5	214				

위 치 도 및 현 장 사 진





산동읍 신당리 1869



산동읍 신당리 1466

Ⅲ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장 창 곤

○ 본 관리계획안은

- 구미 확장단지 조성사업의 매각수익 재투자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주차장 부지를 기부채납받아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구미 확장단지 내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주민 및 상업지역 이용자의 주차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됨. 특히 기부채납 대상 2필지 중 1필지(신당리 1466번지)는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조성되어 운영 중이며, 나머지 1필지(신당리 1869번지)도 향후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인 만큼 확장단지 내 주차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- 또한,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른 산업단지 매각수익의 기반시설 재투자 취지에 부합하고,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해당 토지를 무상으로 기부채납받는 방식으로 취득함에 따라 토지 매입에 따른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.

- 다만, 향후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할 예정인 부지는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와 운영·관리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, 기존 공영주차장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음.

Ⅳ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

Ⅴ. 토 론 요 지: 없 음

Ⅵ. 소수의견의 요지: 없　　음

Ⅶ. 심　사　결　과: 원안가결